

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8] <개정 2023. 4. 18.>

## **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 등의 시험·검정요원의 자격**

(제13조제2호, 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호 관련)

1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정밀측정산업기사 자격을 갖춘 사람
2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정밀측정기능사 자격을 갖춘 후 시험 또는 검사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
3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기계공학·전기공학·물리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과를 졸업(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한 후 시험 또는 검사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
4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를 졸업(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한 후 시험 또는 검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
5.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(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갖춘 후 시험 또는 검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
6. 「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」 제16조제3항에 따라 인정기구가 고시하는 시험 또는 검사 실무자 자격이 있는 사람